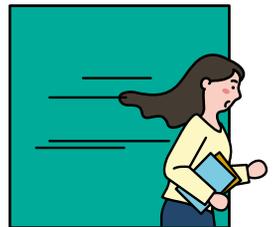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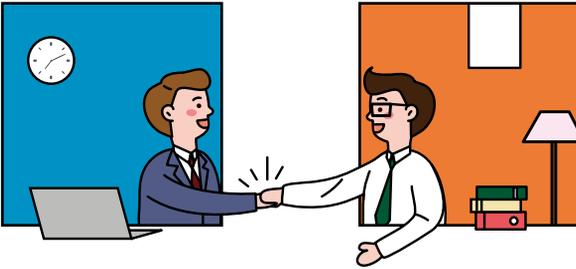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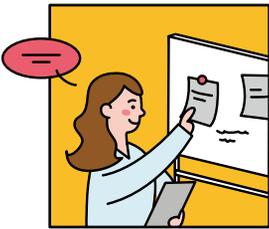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 발간사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공직에 입문할 때의 초심은 모두 이와 같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변화, 느린 바뀔, 감사 혹은 예기치 못하는 불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초심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부 공무원들의 답습, 부작위 등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질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지 낀 유리창은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닦아야 한다.”는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초심을 지키고 시민의 행복과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올해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추천된 사례 모두가 일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으로, 심사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안양시 공무원들의 행정을 보고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진단합니다.

최선을 다한 적극행정은 시민들께 안양시 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시민을 웃게 하고, 살고 싶은 스마트 행복도시를 만드는 추동력이 될 것입니다.

안양시는 행안부가 지정한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이자, 신산업 규제혁신으로 2019, 2020년 2년 연속 규제개혁 전국 1위를 달성한 명실상부 전국최고의 "적극행정 명문도시"입니다.

실패한 프로젝트라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장려하는 선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의견제시 등 면책제도와 "적극행정 명문도시"에 부합하는 전국 최고의 인센티브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안양시 적극행정공무원」을 통해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감하는 적극행정 원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쉽 없이 달려온 적극행정 원년의 열정이 다가오는 2021년에는 안양시 공직사회의 일하는 당연한 문화로서 자리매김하여 시민과 함께 웃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안양시장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 CONTENTS

---

## PART 01. 적극행정&소극행정

1. 적극담당 적극행정	08
2. 소극담당 소극행정	08
3. 적극행정 지원제도	09

---

## PART 02. 적극행정 사례

1. 상반기 수상작	12
2. 하반기 수상작	24
3. 사전컨설팅 사례	40

---

## PART 03. 소극행정 사례

1. 업무태만	46
2. 선례답습	52
3. 무사안일	54
4. 행정편의	60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65
--------------------------	----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PART

# 01

# 적극행정 & 소극행정

---

## 1. 적극담당 적극행정

---

## 2. 소극담당 소극행정

---

## 3. 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 적극담당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입니다.

## 소극담당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소극행정입니다.



소극행정은 엄정히 처벌합니다.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합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처리결과를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민원처리의 적극성과 책임감을 높입니다.

# 적극행정 지원제도

## 적극행정 면책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컨설팅

공무원이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전컨설팅 의견 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sup>1)</sup>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제시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충분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적극행정 책임관은 중요성·시급성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의견제시 효과는 징계 등 면제, 징계요구 등 면책, 면책 건의가 있습니다.

의견제시 면책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대상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란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무원이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

## 적극행정 인사상 우대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가 마련한 선발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합니다. 인사상 우대조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희망과 적극행정 성과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승진부터 포상휴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징계절차 또는 소송과정에서의 법률적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받거나 형사 또는 민사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선임하도록 지원합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있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합니다.



PART

# 02

## 적극행정 사례

---

1. 상반기 수상작

---

2. 하반기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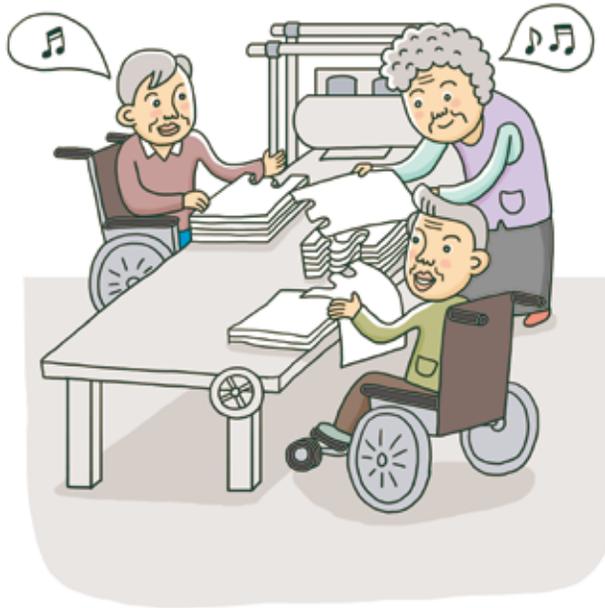
---

3. 사전컨설팅 사례

## 사례 1

# 마음 편하고 안정적인 중증장애인 일터가 재가동 된대요

마음이 일한다. 장애인이 마음편한 안정적인 일터 재가동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과 정향숙)



## 사례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장애인 자활자립작업장에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노동의 기쁨을 누리며 16년간 안정적으로 일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 감사에서 지적받아 작업장을 폐쇄하게 되었어요. 이에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섰지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생산시설과 공정에서 장애인 근로특성이 반영되도록 규제완화와 개선을 이끌어 냈습니다.

직접 조사와 경쟁업체 비교, 입법기관에 어필하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하는 등 발로 뚫 덕분에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움직였습니다. 법 안에서 시스템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용지물 될 뻔한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기준 완화와 개선으로 버려질 뻔한 기존 시설이 재가동되고 그동안 근로해왔던 장애인들의 고용이 승계되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더 생길 것이란 기대와 소득향상으로 생활이 안정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례 2

# 기업 규제 애로 해결로 일터를 지키고 세수도 지켰어요.

안양시 - 기업 원원계약, 기업규제애로 해결하다  
(기업경제과 정종민)



## 사례

산업시설 용지를 최초 분양받은 기업은 5년간 처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용지를 최초 분양받은 S가 자금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A, B회사가 1, 2순위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동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B가 채무불이행시 건물을 인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단서로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실행이 가능할까요?

기업경제과 공무원은 처분제한기간이 부동산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착안하여 실질적인 소유주와 등기상 소유주가 다를 때 B사가 매수할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법 해석을 두고 3명의 변호사가 다르게 의견을 내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우수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 법 적용의 모호 등을 알리며 기업과 산업부 사이에서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여 B사가 기존 산업시설 용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기업은 입주해있던 시설에서 900여명의 직원이 안정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는 우수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하였고 텁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도 지켰습니다.

### 사례 3

# 발 빠른 임시격리시설과 안심숙소 사전 준비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어요

코로나19 관련 임시격리시설 선제적 확보·해외 입국자 감염 위험 차단  
(안전총괄과 유희열)



## 사례

우리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전염병에 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 특성상 확진자 접촉자와 해외입국자를 통한 2차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독립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격리 시설의 필요성을 미리 알고 사전 준비를 하였습니다. 접촉자와 해외입국자, 시설격리자를 위한 임시격리시설과 해외입국자 가족 또는 동거인을 위한 안심숙소 두 방향으로 머물 곳을 마련하여 감염원 유입을 막았습니다.

말로 뛰는 현장 앞에는 안전총괄과 공무원이 있었지요. 숙소뿐만 아니라 객실 부대시설, 위치 선정까지 쉬운 것이 없었어요. 넘비시설이라는 시각으로 선뜻 숙박시설을 내어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급한 대로 캠핑카부터 준비하고 수십 회를 방문하여 사전방역과 피해발생시 책임 등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시켰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미리 마련한 임시격리시설과 안심숙소 운영으로 코로나19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접촉자 중 어린 자녀를 둔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와 같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중 임시격리시설에 160명이 다녀갔고 안심숙소에는 우리시 60명, 인근 시 1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감염 전파를 막는데 지자체간 서로 돕는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 사례 4

# 납세지 일원화로 세금 납부가 편해졌어요

세금 납부 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세 납세지 조정 적극 추진  
(세정과 양경아)



## 사례

안양시와 의왕시는 인접해 있어 건물이 두 지역에 걸쳐 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건물의 지방세는 어디에 내야 할까요? 납부고지서는 두 지자체에서 보내야 하나요?

이 문제를 해결한 세정과 공무원이 있습니다. 두 지역에 걸쳐 신축된 아파트 입주 주민들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양시, 의왕시, 경기도간 회의를 통해 토지 지분이 많은 지자체(의왕시)에서 납부 고지와 징수를 하는 납세지 일원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하는 듯 했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토지 지분이 적은 안양시가 조정교부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납세지 일원화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합의로 의왕시에 위임했을 뿐 안양시 지분에 대한 지방세는 안양시 것이므로 당연히 조정교부금도 받아야 함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를 통해 세금을 한 곳으로 통일하고 안양시 조정교부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금 부과와 징수를 위임하는 합의를 이루었고 규칙 제정을 통해 두 지역에 걸친 과세대상물에 대한 납세지 일원화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른 세수 수입과 두 곳의 자치단체에서 중복되는 비효율적인 행정력 낭비와 징수비용 소모 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사례 5

# 노후아파트 표시변경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졌어요

건축물 표시변경 규제 해소를 통한 명학 두루미마을 재생활성화  
(도시재생과 정효진)



## 사례

40년 된 낡고 작은 이름뿐인 아파트  
특례법(2018. 3. 시행)에 의해 금융지원을 받아 정비가 가능하지만 단독, 연립,  
다세대는 되고 아파트는 안 된대요.

수차례 재건축 추진이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아 중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작은 기적을 위해 도시재생과 공무원이 선례 없는 일에 주저 없이 나  
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행안부, 경기도 등 계속된 건의와 사전컨설팅, 7개월간의 도전으로  
“대지분리 및 지적정리를 완료한 이후에 건축물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 한다면 현행  
기준에 맞춰 변경처리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로써 작은 규모의 노후아파트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노후 주택 밀집 지역에서 건축물 표시  
변경으로 주택 개량이 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되리라 기대됩니다.

사례 6

# 박달복합청사에는 특별한 물이 사용된대요

물 만난 수영장 박달복합청사 건립공사현장 지하수 활용  
(시설공사와 유지하)



## 사례

건물을 짓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지하수가 하루 200톤이 넘게 나온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박달복합청사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상을 초과하여 솟아 나오는 물,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변기나 조경수에 사용 가능한 생활용수로 나와 150톤 이상을 버려야 한 다기에 ...

타 지자체 시설을 견학 하는 등 지하수 활용방안을 찾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정수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음용수 수준으로 정수하여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이에 지하수를 정수하여 수영장 및 샤워장과 생활용수 등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사에서 하루 사용되는 물을 지하수로 사용하면 정수처리장치 설치비용 회수 기간인 약 10개월 이후부터는 연 5,700만원의 수도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장소를 견학하며 지하수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수영장 마감재, 시공의 문제점, 관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박달복합청사에 반영하여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를 건립하였습니다.

사례 7

#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가 안전을 책임져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통합운영이 정부 표준모델로 선정, 전국 광역안전도시 선도  
(교통정책과 윤정호)



## 사례

범죄에 취약한 여성, 학생들의 안전 귀가를 책임진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가 맞춤형 서비스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를 벗어나면 서비스가 중단되어 지역에 상관없이 귀가를 도와 줄 앱이 필요했어요. 교통정책과 공무원은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안전은 안양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국 최초 13개 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시가 중심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령자 안심, 여성가구 안심, 대중교통 안심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도 구현합니다. 지금은 전국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스마트 도시답게 스마트시티센터가 CCTV통합센터 표준모델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도 많이 받고 4건의 특허도 등록했어요. 이걸 비밀인데요. 대한민국 우수 특허 대상도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수상했어요.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협업을 통해 지자체간 경계를 허물고 상생정책으로 중복투자를 막았으며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의 효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양시를 만들었습니다.

안전귀가서비스를 기반으로 320억 예산으로 연구될 실종아동 신원확인과 72억 규모의 지능형 방법기술 개발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조성과 디지털 혁신사업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례 8

# 신안산선 석수역에 출입구가 신설된대요.

신안산선 석수역 석수2동 방면 출입구 추가 신설 반영  
(교통정책과 최건식)



## 사례

신안산선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며 교통이 더욱 편리해지게 되었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은 서울시 금천구와 안양시 석수1·2동 경계에 위치하는데 모든 역사를 통합정거장으로 계획하여 금천구 방향으로만 출입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양시민들은 불필요하게 우회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교통정책과 공무원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계획에 추가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시가 100% 비용을 내야했기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 사업자와 관계 기관 등을 찾아다니며 이해시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시 출입구를 신설하는 개선안이 통과되어 우리시의 비용 부담 없이 연현마을 방향으로 출입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신안산선 석수역에 석수2동 방향으로 출입구가 생기므로 석수1·2동 주민뿐만 아니라 안양시민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현마을 방향 추가 출입구 설치를 사업자 부담으로 하여 예산 34.5억 원이 절감됩니다.

사례 9

# 스마트 도시 안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닐 날이 가까이 왔어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직도 마다하는 자율주행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60억도 댔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이현주)



## 사례

안양에 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니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른 가까운 미래에 안양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 초석을 다지는 스마트시티과 공무원이 있습니다.

안양시를 자율주행의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안 다닌 곳이 없습니다. 시범사업에도 자율주행자동차 제작뿐만 아니라 도로, 관제, 통신, 인프라 구축 등 많은 것이 필요했습니다. 연관 기술과 산업, 정책 등을 배우고 시민, 기업, 시의회와 소통하며 이스라엘까지 다녀오는 노력으로 대내외 20여 곳과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역지자체나 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고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회의적인 시선에서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마인드컨트롤로 이겨내 이제는 행정직이네 전문직이네 따로 구별되지 않는 융합의 시대임을 손수 보여주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밤도깨비 안심셔틀 도시 조성” 기획으로 경기도 First 정책 공모 사업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예산 60억을 확보하여 자율주행 차가 다니는 날이 한층 빨라질 것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교통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연관 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안양시의 미래를 밝게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례 10

# 코로나19에도 화상 면접으로 취업했어요

나는 코로나에도 비대면(화상면접, 온오프연계박람회) 채용행사로 취업한다.  
(일자리정책과 박세정)



## 사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곳과 직장을 구하는 사람 모두 어려움이 생겼어요. 취업박람회와 상설면접이 취소되었거든요.

일자리정책과 공무원은 새로운 발상을 하였지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사람을 뽑고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 즉 비대면(화상) 면접이었죠. 시범운영으로 5명이 면접을 보고 2명이 채용되었어요. 좋은 결과에 더 많은 사람의 취업을 위해 확대를 생각했어요. 온오프(화상)연계 일자리박람회를 여는 것이었죠. 온라인 박람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채용을 도왔습니다. 비대면 방식이 낯선 구직자에게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면접체험을 경험하게 하였고 면접예정자에게는 공간 및 장비 대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 최초 비대면 채용행사로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화상 면접으로 17명, 온오프일자리박람회 개최로 102명, 화상 면접 공간 대여로 9명, 상설면접으로 134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꾸준히 취업자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일자리센터 이용자는 대다수가 중장년층이었는데 화상면접장소를 대여한 사람 전체가 청년일 정도로 청년들의 발걸음이 많아지며 홍보 효과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사례 11

# 삼덕공원이 주차장을 품은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했어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삼덕공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교통정책과 이준영)



## 사례

삼덕공원에 가 보셨나요? 삼덕제지 기부로 만들어진 공원답게 종이가 가진 다양한 형태를 기본으로 디자인 되었대요.

삼덕공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근 지역주민, 중앙시장 상인회, 예술단체, 학부모대표, 공원 및 수암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뭉쳤습니다. 교통정책과 공무원은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예술공간과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제 공원은 넓은 잔디광장, 삼덕 갤러리, 스토리보드, 나눔아트월 등 휴식 공간을 넘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부 공원의 역사와 상징성을 보존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하의 공영주차장은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주민과 중앙시장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삼덕공원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기부와 나눔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장소로 안양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8억과 도비 13억을 확보했고 주차난 해소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사례 12

# 봄·여름·가을·겨울... 그리고 봄 공사현장 재난극복기 들어보실래요?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재난극복기  
(시설공사와 이나영)



## 사례

여기 비산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현장 재난극복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비산1동 주민센터는 임곡지구 철거 예정 건물에 입주해 있어 공사 중인 신축 청사로 2021년 3월 이전이 꼭 되어야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편안하게 넘어간 계절이 없습니다. 그래도 시설공사와 공무원의 주도하에 여러 부서와 공사 관계자들과 협의에 협의를 통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겨내고 있지요.

이곳은 공사 부지 협소로 작업 공간 및 자재를 놓아둘 공간이 없었는데 도로 개설 예정지와 조합 유휴 땅을 활용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유래 없는 긴 장마와 태풍, 코로나19 확산까지 어려움이 컸는데 공법 변경,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공사기간 연장 없이 비용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임시 청사가 철거를 앞두고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민원실을 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동절기에도 상부와 하부 복합 공정 계획으로 공사 중단 없이 공사 현장에 닦친 문제점을 풀어가며 준공을 향해 오늘도 땀 흘리고 있습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재개발지구 도로를 활용하여 토목 공법 전환으로 2억 7천만 원을 절감하고 철근 콘크리트 칸막이벽을 경량벽체로 변경하여 2천만 원을 아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 임시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고 그에 따른 추가 비용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비산1동 주민들이 새로운 청사에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는 행복한 시간이 올 것입니다.

사례 13

# 코로나19 재난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구원투수 등판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는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회계과 손병국)



## 사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크지요. 안양시는 재난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유 재산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모든 곳에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고 하였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양역 지하도 상가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유 재산 임대자임에도 임대료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회계과 공무원은 관련 단체들과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협의 불가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6개월간 임대료 50% 감면과 관리비 동결 및 납부 유예 3개월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자 하는 안양역 쇼핑몰과 자산운용사, 안양시의 마음이 하나로 뭉친 결과입니다.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시는 공유 재산 임대료 감면 451건에서 9억 3천만 원, 안양역 쇼핑몰 지하상가 임대료 인화로 350건에서 8억 2천여만 원, 중앙 지하도 상가 임대료 감면 162건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감액하여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또한 관리비를 동결하고 납부 기간을 유예함으로써 연간 1인당 260여만 원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례 14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의 서막을 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스마트시티과 김갑순)



## 사례

인덕원 주변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오랫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청년스마트타운과 환승, 주거 등 복합단지가 조성될 길이 열렸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공무원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세우고 발로 뛰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 및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2020년 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 자문과 추진내용 검증, 의왕시와 협의를 하며 심의를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재심의를에서 조건부 의결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의 숙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결과

### 적극행정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덕원 주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과 주거지원, 편리한 환승교통체계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례 1

**문언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례

신축 상가 지역 담배 소매인 지정 공고와 관련 「담배 사업법 시행 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라는 문언의 해석이 불분명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 사전컨설팅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수가 둘 또는 그 이상이라는 수치적 의미보다는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소매인이 한 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소매인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알맞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사례 2

**여객터미널 내에 운수 관련 사업자가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지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례

임시 여객터미널 부지 내 운수 관련 영업(가판대 및 버스표 판매)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법인에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

## 결과

### 사전컨설팅 이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공공의 목적이 있으나, 점유자는 운수사업(버스표 수탁 판매 등)을 통한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으로 보여지는 바, 점용료 징수는 타당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PART

# 03

## 소극행정 사례

---

1. 업무태만

---

2. 선례답습

---

3. 무사안일

---

4. 행정편의

사례 1: 업무태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소홀로 시민불편을 유발하였습니다



## 사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위반 내용을 미리 알려 주고 이의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사전 통지 후 6개월에서 최고 1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천여 건의 미수납 등 과태료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시정 요구를 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사례 2: 업무태만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을 방치하였습니다.



## 사례

도로의 구역 안에 물건을 놓거나 시설을 신설 및 개축, 변경 등 점유해서 사용할 때는 허가를 받게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일정 구역의 도로점용을 원하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인적사항 등만 확인 후 자체적으로 만든 출입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점용 허가를 신청할 때는 민원실을 경유하여 수수료를 내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문서를 접수하지 않아 신청 유무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하도록 시정 요구를 하였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동일·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사례 3: 업무태만

자율 방범대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사례

자율 방법대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범죄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방법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자율 방법대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운영비 지급에 반영하여야 하나,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보조금 정산도 하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자율 방법대 관리와 감독에 동일·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사례 4: 선례답습

**도로점용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부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 사례

도로점용 변경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여 도로 점용료가 부당하게 부과되기도 하고 부과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도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차량 출입시설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기간이 만료된 시설물에 대하여 해지 및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감면 대상인 소액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여 징수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정기분 부과 시 감면 신청자들의 변동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로 점용료 정기 사용분 오백여 만원을 추징토록 시정요구를 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사례 5: 무사안일

물품관리시스템 관리 소홀로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사례

공공 물품은 작은 것 하나도 시의 재산으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물품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물품관리 시스템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업무를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용과 관리 전환을 하지 않았고 불용 처리가 되지 않거나 전자태그가 부착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물품 관리에 동일·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사례 6: 무사안일

**형식적인 재물조사로  
재활용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사례

재물 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불용 물품이 알맞은 때에 처리되지 않아 재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소홀로 물품이 분실되거나 이동하여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재물조사 및 관리에 동일·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사례 7: 무사안일

**통장 모집을 소홀히 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사례

통장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국가나 공공 단체의 일을 보조하여 수행하는 행정 구역의 단위인 통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통장 모집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통장이 몇년간 공석이였음에도 모집 공고를 실시하지 않거나 연 1~2회 실시하는 등 통장 위촉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통장 모집에 동일·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사례 8: 행정편의

# 미흡한 입찰공고로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 사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조건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에 위탁하는 용역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확하게 공고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분담이행 방식에 대한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미흡하게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적격 심사 대상이 되는 업체에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입찰을 끝마쳤습니다.

---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는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사례 9: 행정편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업체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 사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과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조에는 해당 식품에 관한 정보는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한글 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였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담당 공무원은 아직 시행 전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적용하여 과징금과 해당 제품을 폐기 하도록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업체의 이의 신청으로 행정 심판에서 위 처분은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급효 금지 원칙 위반으로 인용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시정 명령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 결과

### 소극행정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동일·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였고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는 문책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5호, 2021. 1. 5.,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494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변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25.>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5.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6. 그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 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 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0. 8. 25.>
- [제목개정 2020. 8. 25.]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0. 8. 25.>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개정 2020. 8. 25.>
-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0. 8. 25.>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 8. 25.>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⑥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개정 2020. 8. 25.> [제목개정 2020. 8. 25.]

-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 [제목개정 2020. 8. 25.]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0. 8. 25.>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④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정 또는 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20. 8. 25.>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8. 25., 2021. 1. 5.>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0. 8. 25.>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신설 2020. 8. 25.>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를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 8. 25.>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

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 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 내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25.]

부칙 <제31375호, 2021. 1. 5.>(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발간등록번호 71-3830000-000048-10

발행일 2020.12

발행처 안양시청 정책기획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전화 031.8045.2866

팩스 031.8045.6504

디자인·인쇄 열린기획 031.441.8111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시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 안양시 적극행정 공무원



안양시

1405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Tel. 031.8045.2866 | Fax. 031.8045.6504 | [www.anyang.go.kr](http://www.anyang.go.kr)